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42

발의연월일: 2024. 9. 10.

발 의 자 : 김 현 • 박민규 • 박홍배

정진욱 • 이정헌 • 송재봉

주철현 · 최민희 · 황정아

김 윤 • 문금주 • 김영환

이병진 · 이광희 · 강준현

박희승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자 등의 자질과 능력 등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은 민원사주와 편향된 정치심의로 언론의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가운데 임기종료 다음날 기습적으로 문을 걸어 잠근 채 회의를 열어 날치기 연임까지 강행함.

방심위의 방송내용 심의·규제 권한은 자칫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해지면서, 장관급 인사로 분류되는 방심위원장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제도 도입의 필요성 이 커짐.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청문 대상이 되어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공직자로서 역사관,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이 검증될 수 있도록 「국회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65조 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43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또는"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생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2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	
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	1
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	
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	
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	
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	
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u>또는</u>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u> 또는</u>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